

『음악논단』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2017년 5월 16일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학술지 『음악논단』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 및 심사자, 편집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연구자 의무

제1조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제3조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출처의 명시 없이 그대로, 혹은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참조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2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에 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을 이중출판, 이중투고하지 않는다.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명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한다.
-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느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뿐 아니라,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5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평가하기에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논문을 탈락시킬 때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논문에 대해 타 연구자와 논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맡아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자, 저자,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를 취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자에게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연구자는 이후 3년간 『음악논단』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장 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

제1조 심사위원이 제4장 제2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1조의 위반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이후 3년간 『음악논단』의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

제8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